



2022학년도 1학기 교수 특별채용 공고문

2021. 12.

 **신한대학교** | 교무처 / 교무팀

2022학년도 1학기 교수 특별채용 공고

I 특별채용 학과 및 전공

가. 정년트랙 전임교원 : 총 1명

연번	학과명 (캠퍼스)	전공분야	교원구분	초빙 인원	지원자격
1	마이크로 디그리대학 (의정부)	S/W전공	정년트랙	1	-공학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-IoT 및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SW개발 경력 15년 이상자 -기업내 대형프로젝트 기획 및 연구 수행 경력자(우대) -대기업 임원급 이상 경력자(우대)

II 공통 지원 자격

- 1) 「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사립대학 교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
- 2) 채용공고일 기준 공고문에서 정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(석사학위 취득 예정자 지원불가)

III 접수기간 및 방법

□ 접수기간

- 2022. 1. 3(월) ~ 2022. 1. 7.(금) 18시까지

□ 접수방법

- 접수기간 중 이메일, 우편접수, 방문접수(마감시간 도착분에 한함)
- 우편물 봉투에 “ ○○○학과 교수초빙지원서류 재중” 기재

□ 접수처 및 문의

우) 11644 경기도 의정부시 호암로 95 신한대학교 교무팀 교원인사담당
(문의전화 : 031-870-3343)
담당자 E-mail : jykkebi@shinhan.ac.kr

IV 제출서류

구 분	제 출 서 류	비 고
제출서류	필수	
	1. 교원임용지원서 1부 [붙임1]	
	2. 자기소개서 1부 [붙임1]	
	3. 연구계획서 1부 [붙임1]	
	4. 신규임용 제한 여부 확인서 [붙임1]	
	5. 개인정보동의서 [붙임1]	
	6. 서약서 1부 [붙임1]	
	7. 학력 및 성적증명서 각 1부	- 학사(전문학사 포함), 석사, 박사 모두 제출 ※외국대학에서 학위 취득 자(①②③제출) ① 학위증 사본 ② 본인 서명의 번역문 ③ 박사학위등록필증(한국연구재단 발행)
	8. 자격증 및 지적재산권 사본	- 전공 관련 분야에 한함(사본제출) - 특허(등록된 것에 한함): 특허명, 등록번호, 등록일자, 본인 성명을 확인할 수 있는 공고전문 제출 ※ 출원 중인 특허는 불인정 ※ 자격증은 임용 후 원본과 대조
	9. 경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	- 교육경력: 정규 교육기관만 인정 - 강사경력: 증빙서류(①② 제출) ① 강의경력증명서 ② 재직(경력)증명서 - 산업체경력: 증빙서류(①② 제출) ① 재직(경력)증명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- 지원서 기재한 경력 및 재직증명서 모두 제출 - 외국어로 된 증명서는 국문 번역본(본인서명 명기)을 첨부
	10. 우대사항	- 기업내 대형프로젝트 기획 및 연구 수행 경력을 증빙하는 서류나 경력기술서로 제출 - 임원급 이상 경력에 대한 재직(경력)증명서 제출

★우편 제출과 별도로 제출서류 1번~4번 ‘한글파일’로 작성하여 담당자 E-mail 제출(필수)★

V 심사기준 및 절차

1차 기초심사(적/부) 및 전공심사 (100점 만점)	2차 면접심사 (100점 만점)
기초심사 - 공고문에서 정한 지원 자격 적부심사 전공심사 - 전공분야와 학위과정 전공 일치여부 - 해당분야 교육 및 산업체 경력 [별표1 참조] - 관련분야 자격증 [별표2 참조] 및 연구계획 - 채용공고 내 우대사항	- 교육자로서의 인격과 품성 - 교육자로서의 사명감과 자질 -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- 임용 후 활동계획 (대학 발전기여 등)

- 기초·전공심사 심사 결과 순위에 의하여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내에서 면접 심사 대상자 선정
- 상기 심사절차 외 필요에 따라 추가 심층면접이 진행 될 수 있음

VI 공개강의 및 면접심사 일정

- 심사에정일

구분	내용	예정일자	비고
대상자 통보	면접대상자 발표 (대상자 개별 통보)	2022.1.11.(화)	개별통보
심사일	면접 심사	2022.1.13.(목)	

※ 상기 일정은 대학 사정에 의하여 변경 될 수 있음.

- 심사 장소 및 세부 심사 시간 일정은 별도 통보 함.

VII 임용직급 및 임용예정일

- 임용직급: 부교수 이상
- 임용예정일: 2022년 2월 1일자

-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접수마감일 및 마감시간 기한까지 제출 완료
- 외국어로 된 모든 서류는 『본인 서명의 국문요약본』을 반드시 첨부 하고, 외국박사학위 취득자는 한국연구재단의 『박사학위등록필증』을 첨부
- 서류전형 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일정을 개별 통지함
- 초빙분야 별 복수지원이 불가하며, 적격자가 없을 시 초빙하지 않을 수 있음
- 접수 시 구비서류가 미비 된 서류는 접수하지 않으며, 허위 기재(연구논문 발표 실적, 경력, 학위과정 등) 또는 제출된 서류에 허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하거나, 임용을 취소함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(단, 채용대상자 외 지원자 연구실적물을 반환받고자 할 경우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(제11조, 동법 시행령 제2조, 제4조)에 의거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부터 20일까지 반환을 청구[별지2]하는 경우에 한하여 반환
- 관계법령에 따라 동일, 특정대학 출신자는 임용이 제한될 수 있음
-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교 교원 인사 관련 규정에 따름

[별표1] 연구 및 교육경력 산출기준

경 력 내 용	환산인정률(%)
1. 교육경력	
가.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	
① 국방대학원에서 교수직에 근무한 경력과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수직에 근무한 경력	100
② 사관학교의 교관(부교수 이상의 교수직에 한함)으로 근무한 경력	100
③ 학력인정을 받은 전문대학 이상의 각종학교에 근무한 경력	100
④ 학력인정을 받지 못한 전문대학 이상의 각종학교에 근무한 경력	60
⑤ 대학 또는 전문대학 시간강사의 교육경력	50(단, 주당 5시간 이하는 30%, 주당5시간 초과 시에는 시간당 10% 가산하되, 50%를 넘지 못한다)
⑥ 대학 또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겸임교수, 초빙교수(객원교수, 강의 교수 등)의 교육경력	50
나.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	
① 중고등학교 교원 교육경력이 (전문)대학에서 담당할 과목과 부합되는 경우	40
②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	40
③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(전문)대학에서 담당할 과목과 연계되는 경우	40
④ 유치원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(전문)대학에서 담당할 과목과 연계되는 경우	40
다. 조교 및 체육 코치 등	
① 대학 (총)학장의 발령에 의하여 조교로 근무한 경력	70
② 공인된 체육단체(공인단체의 체육팀 포함) 및 각 대학의 체육코치	70

경 력 내 용	환산인정률(%)
2. 연구경력	
가. 최종 학위취득자	
① 박사학위과정 이수자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그 연구경력	석·박사과정 재학년수 (석·박사과정을 포함하되, 석·박사과정을 합하여 5년을 초과할 수 없다)
② 석사학위 과정 이수자로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의 연구경력	석사과정 재학년 수(단, 2년을 초과할 수 없다)
나. 최종 학위과정 수료자 등	
①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자로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자의 연구경력. 단,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대학원의 박사과정을 이수중인 자로서 그 성적이 현저히 우수한 자의 연구경력	박사과정 재학년수(석·박사과정을 포함하되, 석·박사과정을 합하여 5년을 초과할 수 없다)×0.7
②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자로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못 한자의 연구경력	석사과정 재학년수(단, 2년을 초과할 수 없다)×0.7
다.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행한 연구경력	
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술연구(실험실습을 포함한다)를 대학·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의 학교에서 행한 연구경력	100
라.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교수직에 근무한 경력	100
마. 다음의 연구원(소)에서 연구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	
① 연구원(소)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	100
② 육성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	100
③ 특정연구기관육성법 및 동시행령에 연구기관으로 지정된 연구기관	100
④ 기타 법률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체로서의 연구기관	100
바. 기타의 연구기관이나 시설에서 전임으로 연구한 경력	
①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한 연구기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시설에서 전임으로 연구에 종사한 경력	100

경 력 내 용	환산인정률(%)
3. 산업체등 근무경력	
가. 국가기관등 근무경력	
① 대학(전문대학 포함) 전공분야를 국가기관(시설 및 군 경력 포함)에서 당해 전문학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	100
② 대학(전문대학 포함)에서 전공한 분야의 기술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	70
③ 대학(전문대학 포함)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(국영기업체 또는 공공단체)에서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	100
나. 민간기업체등 근무경력	
① 공과계대학(공업교육대학, 공업교육학과 포함)졸업자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민간산업체에서 그 전공분야와 동일한 직무에 종사한 경력 · 대기업체 등 · 중소기업체	70
② 상과대학 졸업자로서 민간은행 등 금융기관에 근무한 경력	50
③ 대학 신문학과 졸업자의 언론기관에서 기자 및 편집원으로 근무한 경력	50
④ 대학(전문대학 포함) 전공분야를 기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종사한 경력 · 대기업체 등 · 중소기업체	50
다. 자격증 소지자 등의 근무경력	
① 판사·검사로 근무한 경력	100
② 변호사 개업기간	100
③ 공인회계사·세무사·감정평가사·변리사 개업기간	50
④ 한국 해양대학, 부경대학, 목포해양대학 졸업자로서 갑종1등 항해사(기관사) 이상 면허소지자의 원양구역 승선경력, 항공대 졸업자중 비행교육에 종사한 경력	100
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기술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해당 기술분야에서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대학 또는 대학원의 전공과목과 근무경력이 부합되고 전문대학 교원으로서 담당할 과목이 이에 연계될 수 있는 경우	70

경 력 내 용	환산인정률(%)
라. 의사등 근무경력	
①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병원 또는 의료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종합병원, 병원, 치과병원, 한방병원(의원, 치과의원, 한의원 제외)으로서 공공기관이 확인하는 병원에서 인턴 또는 레지던트로 근무한 경력	50
② 의(치)과대학 졸업자의 (한)의원 개업기간	50
③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병원 또는 의료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종합병원, 병원, 치과병원, 한방병원(의원, 치과의원, 한의원 제외)으로서 공공기관이 확인하는 병원에서 전문의사로 근무한 경력	70
④ 국가 공공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병원 또는 의료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종합병원, 병원, 치과병원, 한방병원(의원, 치과의원, 한의원 제외)으로서 공공기관이 확인하는 병원에서 전임 간호원으로 근무한 경력	50
마. 성직자 근무 경력	
① 신학대학 졸업자가 목사 또는 신부로 재직 한 경력	50
② 대학 불교학과 졸업자가 사찰에서 승려로 재직 한 경력	50
바. 외국공관 근무경력	
① 대학에서 외국어과를 전공한 자의 외국 공관에서 근무한 경력	70
사. 예·체능 관련 단체 주요임원 근무경력	
① 공인된 상설 예·체능 및 창작·실기에 관한 단체 주요간부의 근무경력	50

[별표2] 자격증 산출기준

구분	기술사·건축사·변리사·변호사 등(분야최고자격증)	기사	산업기사	기타(국가공인자격)
배점	3	1.5	1.0	1.5 기준 1급(정)1.5, 2급(부)1.0

- 관련 분야의 자격증만을 인정
- 국가공인자격만 해당하며 민간자격의 경우 인정하지 않음. 다만, 민간자격의 경우 검정기준, 검정과목 및 응시자격 등 검정수준이 국가자격과 동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수준의 자격증으로 관련 분야에서 인정·통용되는 자격증의 경우 심사위원 심의 결과에 따라 “기타(국가공인자격)” 으로 인정 될 수 있음
- 동일종목의 자격증일 경우 상위종목의 자격증만을 인정

[예] 정보처리기술사, 정보처리기사, 정보처리산업기사 소지자일 경우 정보처리기술사만 인정

※ 기술사의 경우 연구실적에 포함한 경우 제외